

원자력설비 및 잠수설비 등 특수한 구조나 설비를 가진 선박에 대한
검사의 준비사항(제31조제1항 관련)

1. 정기검사

- 가. 내압동체의 두께 및 형상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것
- 나. 재료시험의 준비(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)
- 다. 비파괴검사의 준비
- 라. 압력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

2. 중간검사

- 가. 내압동체의 두께 및 형상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것
- 나. 효력시험의 준비

3. 임시검사

- 가. 새로 제조된 잠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1호의 검사준비
- 나. 현존의 잠수설비를 새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2호의 검사준비. 다만, 해당 잠수설비가 정기검사를 받은 때부터 5년 이상 지난 경우에는 제1호의 검사준비